특정감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- 시설공사 하자관련 특정감사 -

2020. 10.

경상북도
GYEONGSANGBUK-DO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원, 명)

일련번호	소 관	건 명	처 분 요 구		
			처분종류	재 정 상 조치금액	신 분 상 조치인원
1	봉화군 @@@@과	◒◒ □□□□□□□□장 설치사업 하자 미조치	시정		
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연번	제 목	관 련 자			문 책	비 고
	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	
1	◒◒ □□□□□□□□장 설치사업 하자 미조치					

3. 처분요구일람표

1) ◒◒ □□□□□□□□장 설치사업 하자 미조치 (시정) ····· 2

일련번호	1	감사자	시설6급 김상태		공개(○), 비공개( 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	
수감부서(처리부서)	봉화군 @@@@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	

경 상 북 도

시 정 요 구

제 목 ◒◒ □□□□□□□□장 설치사업 하자 미 조치

소 관 청 봉화군

관 계 부 서 @@@@과

내 용

봉화군 @@@@과에서는 '◒◒ □□□□□□□□장 설치사업'을 ㈜$$$$과 계약(2017.5.18.)하여 시행하고 준공(2019.4.30.)하였고 현재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,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또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봉화군 @@@@과에서는 2019. 4. 30. 준공 된 '◒◒ □□□□□□□장'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종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.

그 결과 2020년 9월 15일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아래 [사진]과 같이 경량철골재 및 출입구 문틀 부식이 발생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사진] ◒◒ □□□□□□□□처리장 하자 현황

		
경량철골재 부식	**경량철골재 부식**	**출입구 상부 문틀 부식**

조치할 사항 **봉화군수는**

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

② 또한, 시설물 관리업무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,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